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

1)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영 별표 16)

☐ 공무원 경력(환산율 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서 다음의 경력을 포함한다.

① 재건국민운동본부 및 국민운동본부 직원 경력(1961. 6. 12 ~ 1964. 8. 14.)

- 본부와 각 지부(촉진회는 제외함)에서 본부장, 차장, 지부장, 이사, 참사, 비서장, 간사(촉진회 또는 각 위원회 상임간사는 제외), 주사, 비서, 록사 또는 참의, 부의, 부이사, 부참사, 서사 및 기능직으로 근무한 경력

*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② 「국가공무원법」 (1963.12.16.공포, 법률 제1521호) 제2조제8호에 의해 채용된 기한부공무원 경력

③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 전임강사, 정원 상의 조교와 준교사 경력은 포함

* 「공무원 인재개발법」(舊 「공무원교육훈련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임명된 교수요원(교관요원)에 대하여는 영 별표 22(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강사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 또는 면직된 공무원으로서 다음의 휴직 또는 면직된 기간

시 기 별	경 력 인 정
1957. 8. 14. 이전	공무원 재직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면직(병역기피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가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57.8.15. ~ 1963.5.31.	공무원 재직 중 병역의무 수행을 위하여 입대하였다가 제대 후 복직된 자의 실제 군복무기간
1963. 6. 1. 이후	병역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된 자의 복무기간 (입대 전, 제대 후의 공백 기간도 포함)

⑤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원의 연수생 경력

⑥ 군무원인 향토예비군 중대장으로 근무한 경력

* 종전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임시군무원 신분도 포함함. 다만, 군무원 등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향토예비군 중대장 경력은 공무원 경력이 아니므로 포함될 수 없다.

○ 군 복무경력도 공무원 경력에 포함되며 다음의 경력으로 한다.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

-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

* 병·부사관·준사관·장교와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舊 방위병 포함)·상근예비역·대체역을 포함한다.

-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

- 학도의용군경력

* 군 복무경력 중 전투중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다.

< 군 복무경력기간 >

① 원칙 :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

* 병적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 포함

②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 : 8월

*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음.

③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 : 군 복무경력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한다.

-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 군간부후보생(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한다(「병역법」 제2조 참조).

④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

- 1982.9.9. 이전(방위소집 입영자)

-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 1년
-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 6월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1982.9.10.~1985.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 :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한다.

【 방위소집 복무인정기간 변경에 따른 호봉 재확정 방법 】

○ 적용대상자 : '82.9.10.~'85.12.31. 방위소집 입영자

○ 호봉 재확정 방법

- 종전 호봉 확정시 확인한 병역사항을 기준으로 호봉재확정 실시

* 다만, 필요한 병역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등 확인 필요

구 분	기 존	재확정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	1년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	6월	

- 재확정일 : 2019. 2. 1.

【예시1】 '83년 1월 3일 방위소집 입영하고 '84년 3월 2일 소집 해제된 자*의 경우

* '19.1.1.기준 6급 25호봉(잔여기간 7월 25일, 차기승급: '19.6.1.)

- ① 기존에 호봉인정기간이 1년인 자로, 호봉 재확정 대상자에 해당됨
- ② '19.2.1. 호봉 재확정 결과 : 6급 25호봉(잔여기간 10월25일, 차기승급: '19.4.1.)
· 잔여기간 10월 25일 = 7월 25일('19.1.1.기준 잔여기간) + 2월(재확정기간) + 1월(재직기간)

【예시2】 '83년 1월 3일 방위소집 입영자로 '83년 8월 10일 소집 해제된 자*의 경우

* '19.1.1.기준 6급27호봉(잔여기간 10월 25일, 차기승급: '19.3.1.)

- ① 기존에 호봉인정기간이 6월인 자로, 호봉 재확정 대상자에 해당됨
- ② '19.2.1. 호봉 재확정 결과 : 6급 28호봉(잔여기간 1월3일, 차기승급: '20.1.1.)
· 잔여기간 1월 3일 = 10월 25일('19.1.1.기준 잔여기간) + 1월 8일(재확정기간)
+ 1월(재직기간) - 1년(호봉승급반영)

○ 연봉 조정 방법

- 연봉조정일 : 2019. 2. 1.
 - 현재 연봉대상자 중 방위소집 복무기간의 군경력 추가인정시 다음의 순서에 따라 기본연봉(Y) 조정
 - i) 호봉제를 가정하여 '19.2.1. 당초 호봉(근무연수) 및 정기승급일 기준,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책정 방식으로 기본연봉(A) 계산
 - ii) 호봉제를 가정하여 '19.2.1. 방위소집 복무기간의 군경력 추가인정이 반영된 호봉(근무연수) 및 정기승급일 기준, 신규채용에 따른 연봉책정 방식으로 기본연봉(B) 계산
 - iii) ii)의 기본연봉(B) - i)의 기본연봉(A)의 금액(차액분)을 대상자의 '19년 기본연봉(Y)에 가산·조정
- ※ 단, '2018년도 계급별 연봉 한계액'(고위공무원의 경우는 '2019년도 기준급 한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산

【예시】 '19년 3급(상당) 공무원 기본연봉(Y) 87,000,000원(가정)

- i) 호봉제를 가정했을 경우 '19.2.1. 당초 3급 25호봉(잔여기간 3월 20일, 차기 승급일 '19.11.1. 근무연수 '24년) 기준 기본연봉(A) : 88,288천원 (88,287,648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 봉급액 : 5,691,600원(3급 25호봉 5,680,800원에 1호봉 승급액 (43,100원)의 3/12인 10,775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 봉급연액 : 68,299,200원(5,691,600원 × 12개월)
 - ▶ 정근수당 : 5,691,600원
 - ▶ 정근수당가산금 : 1,320,000원(110,000원 × 12개월)
 - ▶ 관리업무수당 : 6,146,928원(5,691,600원 × 108%)
 - ▶ 명절휴가비 : 6,829,920원(5,691,600원 × 120%)
- ii) 호봉제를 가정했을 경우 '19.2.1. 방위복무기간 중 2개월을 군복무 기간으로 추가 인정시 '19.2.1. 3급 25호봉(잔여기간 5월 20일, 차기 승급일 '19.9.1. 근무연수 '24년) 기준 기본연봉(B) : 88,398천원 (88,397,664원을 최종 백원단위에서 절상)

- ▶ 봉급액 : 5,698,800원(3급 25호봉 5,680,800원에 1호봉 승급액(43,100원)의 5/12인 17,958원을 합산한 금액을 최종 십원단위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금액)
- ▶ 봉급연액 : 68,385,600원(5,698,800원 × 12개월)
- ▶ 정근수당 : 5,698,800원
- ▶ 정근수당가산금 : 1,320,000원(110,000원 × 12개월)
- ▶ 관리업무수당 : 6,154,704원(5,698,800원 × 108%)
- ▶ 명절휴가비 : 6,838,560원(5,698,800원 × 120%)

iii) '19.2.1. 기준 기본연봉(Y) 조정 : 87,110천원

- ▶ 88,398천원(ii의 기본연봉(B)) - 88,288천원(i의 기본연봉(A))
= 110천원을 대상자의 '19년 기본연봉 87,000천원에 추가가산

-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

-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
 - *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舊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 *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군간부 후보생(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영 별표 16 제1호 가목)

⑤ 의무경찰대원(舊 전투경찰대원) 복무기간

- 「병역법」 및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전투경찰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⑥ 교정시설경비교도 복무기간

- 「병역법」 및 「舊 교정시설경비교도대 설치법」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⑦ 대체역 복무기간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복무한 기간은 군복무경력으로 인정한다.

□ 유사경력(환산율 5~10할) (※ 1948년 8월 15일 이후 경력에 한함)

가) 전문·특수경력(환산율 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민간 전문분야 야근무경력 (10할 이내)	○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 특정직공무원 등	○ 「민법」에 의한 재단 법인 및 사단법인 ○ 「상법」에 의한 합명· 합자·주식·유한회사 ○ 개별법에 의한 연구 기관등 법인체 ○ 사업자 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 외국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법인 등	○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 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고 근무한 경력 * (1)~(3)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 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며, 「별정직공무원인사 규정」 제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동조제3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기관별 「호봉 경력 평가 심의회」에서 '동일한 분야' 근무경력을 결정함 (1)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소속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2)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국가공무원 법」 제28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 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 받은 경력 (3)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1), (2)에 상응하는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 동일한 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던 중 자격증을 취득하여 자격증 취득 전·후 업무 동일성이 인정되고, 해당 경력이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의 업무와 동일한 분야의 경력인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경력 - 기관에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이 있고, 경채시험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한 경력과 동일한 경력(단,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일반행정직 등 행정업무담당 직렬은 제외) * 자격(면허)증·박사학위 취득일 : 법령 또는 학칙 등에 따라 해당 자격이 부여된 시점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기타 직무분야와 관련하여 소속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및 학위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과 개별적으로 협의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② 교육·연구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중 연구 및 과학기술분야의 공무원	○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 법」 제2조에 규정된 교육기관 ○연구기관(연구를 목적 으로 하는 기관) - 법령 또는 학칙에 의 하여 대학에 부설된 연구기관 - 정부에서 설립기금 이나 2년 이상 운영 유지비를 보조받는 독립된 연구기관 -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 이상 3명 또는 석사급 이상 15명 이상인 독립된 연구기관 ○외국의 대학(국내전문 대학에 준하는 학교 포함) 이상의 - 교육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 ○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약하여 인정된 연구 기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근무하는 연구·과학기술 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 받으며 근무한 경력(이 경우 동일분야는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함. ※ 연구지원 및 보조업무는 제외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근무 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 인원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 (시간강사 등 경력은 5할 이내) 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되,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실제 강의 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으로 인정함 * 초·중등학교 시간강사경력 $= \text{근무기간} \times \frac{\text{주당 실근무시간}}{\text{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③ 언론기관 근무경력 (10할 이내)	○ 공보업무를 주된 기능으로 하여 설치한 정부의 각급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직제상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이상의 기관에 한한다) ○ 공보업무를 주된 직무로 하는 공무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일간신문사, 인터넷신문 ○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외신기관 ○ 「방송법」 제9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허가를 받은 방송국 ○ 외국의 일간신문사·통신사·방송국으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외국언론기관 ○ 기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언론기관	○ 신문, 통신 또는 방송의 - 보도·편집·제작·편성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근무한 경력 ※ 비정규직 경력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관련 여러 정황 등 (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10할 이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거쳐 결정함
④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고도의 특수 경력 (10할 이내)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객관적으로 고도의 전문분야 또는 특수분야라고 공히 인정될 수 있는 업무 - 국가에서 특히 필요하나 전문 인력이 희소하여 충원이 극히 곤란한 업무	○ 법인체·회사 등	○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인정된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잡급직원규정」 (대통령령 제7265호)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대통령령 제7976호)에 의한 잡급직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잡급직원규정」 (’75. 1.1~’81.12.31)에 의한 잡급경력 ○「지방잡급직원규정」 (’76.1.1~’82.3.4)에 의한 잡급경력 * 예산과목상 상용잡급 이라 하였음
② 「잡급직원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규정」 시행일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	”	○「잡급직원 규정」 및 「지방잡급 직원 규정」 시행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2월 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에서 지급된 경력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근무한 경력 중 영 별표 16의 2. 나. 1)외의 경력 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다음의 근무경력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 초·중·고 육성회 및 대학의 기성회 근무경력 - 경찰관서의 방법원, 교통지도원 근무경력 - 「사무보조원운용지침」에 의한 사무보조원 근무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사실상 공무를 수행하고 3월이상 근무한 경력 ○「잡급직원 규정」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시행 일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이상 근무하고 봉급이 인건비 이외의 예산에서 지급된 경력 및 「잡급직원 규정」 및 「지방잡급직원 규정」 시행일 이후 임시직, 잡급, 촉탁 등으로 3월 이상 근무한 경력
④ 시보 임용전 이수한 교육훈련경력 중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력 (10할)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해당직급에 임용된 경우의 시보임용 전 교육 훈련경력(교육 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하되, 실무 수습 및 견습기간은 포함)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청원경찰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경력
⑥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 분야 8할 이내)	〃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원산림보호 직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⑦ 직업훈련지도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 법」에 따른 직업능력 개발훈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⑧ 위원회의 상임· 전임 직원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 다만, 한시 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는 위원회는 제외함	○위 원 회 등의 상임 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⑨ 「재외공관고용원 규정」(각령 제901 호)에 의한 고용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	○재외공관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의한 고용원으로 근무한 경력
⑩ 민간직업상담원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8할 이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한 직업상담원으로서 근무한 경력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 기타경력(환산율 5~10할 이내)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① 별정우체국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등 공무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별정우체국에서 근무한 경력
② 국제기구 근무 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국제법상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는 다음의 조직체를 말함 ·유엔본부기관 및 산하기관 ·기타 정부간에 체결된 국제기구	○국제기구에서 근무한 경력
③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 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공사 및 공단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 법인으로서 인사혁신 처장이 인정하는 법인 (별표 5 참조)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 - 단, 비동일분야 근무 경력에는 행정·경영· 연구·과학기술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 조직위원회 근무경력 (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근거하여 설치 되는 각종 국제경기 대회조직위원회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 에서 근무한 경력

경력구분	합산대상공무원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⑤ 사립학교 교·직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교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⑥ 경찰대학경력(5할)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공무원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의 교육기간
⑦ 국·공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 이내)	○영 별표 16의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등 공무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국·공립학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해 국·공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⑧ 사립학교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근무경력(동일분야 10할 이내, 비동일분야 5할 이내)	〃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의한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⑨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의무복무경력(10할)	〃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관	○「병역법」에 따른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의무복무한 경력(단, 의무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산정)

* ‘동일분야’에 대해서는 가) 전문·특수경력 중 ①민간전문분야 경력에 대한 ‘동일한 분야’ 인정 기준을 적용한다.

* 비정규직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 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한다.